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11. 11 선고 2021가단124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1. 5.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4. 8. 접수 제104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E 주식회사에 양도된 C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E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후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17. 'C은 원고에게 43,872,916원 및 그 중 30,216,739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1487),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 27.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F이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C의 상속분은 1/7이었다.

다. C과 피고를 비롯한 F의 상속인들은 2021. 4. 8.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지분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2011. 5.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 약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C의 형제로서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G소중회의 재산인데, 위 종중으로부터 피고 등의 아버지 F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F이 사망하자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일 뿐 C이 상속받을 재산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위 종중이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종중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원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유효한데,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4. 8. 접수 제104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덕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논산시 H 전 578㎡

2. 논산시 I 전 155㎡

